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

[시행 2016. 6. 30.] [금융감독원세칙, 2016. 6. 23., 일부개정]

금융감독원(기업공시제도실), 02-3145-8443

부칙 <제호,2009.7.3.>

이 세칙은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(2009년 7월 1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)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호,2010.11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세칙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유효기간) ①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.

② 제6조제2항의 효력기간 이내에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된 합병에 대해서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
부칙 <제호,2012.4.4.>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호,2012.12.5.>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2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세칙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세칙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합병에 대해 서는 종전의 세칙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세칙에 따른다.

부칙 <제호,2014.7.16.>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부칙 <제호,2016.6.23.>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